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전 이전 〉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527호)

2024.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전 이전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11. 20.
3. 회 부 일 : 2023.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임.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 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채투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방에 대한 지역자금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경기 및 지방과 이동이 편리해 지방중소기업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본사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판단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전 이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u>서울 특별시에</u> 둔다. ② (생략)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 <u>대전 광역시에</u> -----. ② (현행과 같음)

-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 부문의 자본과 인프라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이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고려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경제집중도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¹⁾ 비중은 2016년부터 50%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융·보험업 부문 GRDP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비중이 6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시·도 단위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수도권 및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GRDP) 비교>

(단위: 조원,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 부문	수도권 (비중)	749.5 (49.3)	800.5 (49.5)	862.8 (50.5)	942.0 (51.9)	972.6 (52.8)	1,050.6 (53.3)
	전국 (비중)	1,519.4 (100.0)	1,615.8 (100.0)	1,709.7 (100.0)	1,814.1 (100.0)	1,842.4 (100.0)	1,972.4 (100.0)
금융· 보험업	수도권 (비중)	48.1 (64.9)	52.5 (63.9)	58.6 (65.2)	64.9 (65.7)	76.2 (68.0)	84.1 (68.3)
	전국 (비중)	74.1 (100.0)	82.2 (100.0)	89.9 (100.0)	98.8 (100.0)	112.1 (100.0)	123.1 (10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그간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9월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12월 신용보증기금이 대구로 이전하는 등 부산·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최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여건에 관한 임직원의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²⁾와 인구 증가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평가도 있음.³⁾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

2)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비중은 2014년 10.6%에서 2022년 23.4%로 증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3)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 p.2.

울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충청권은 강원지역과 함께 지역 금융회사가 없어 지역기반 은행의 유치 필요성이 큰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은행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으며,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이 부산·대구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하여 충청권이 금융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 수도권에 집적된 금융기관 및 산업체와의 업무협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서울과 부산 역시 아직 국제적인 금융중심지⁴⁾로서 위상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⁵⁾에서 금융공공기관을 그 외의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하나, 중소기업은행 본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5)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영국계 컨설팅 회사인 Z/Yen사가 2005년부터 세계 주요 금융도시의 경쟁력지수인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를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 중국개발연구원(CDI)과 공동발표하고 있음. 2023년 3월 기준, 서울은 10위(2020년 33위), 부산은 37위로 상승하였으나,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에 비해서는 낮음.

점의 지방 이전은 신중해야 하며, 현 체제 하에서 지역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등 중소기업은행의 지역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과 집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도 각 지역의 특성 및 금융산업 발달 정도,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104
